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무역환경(개인에 의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하고, 관세청에 1명(6급), 인천세관에 2명(7급 1명, 8급 1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에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및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술 도입 등 정보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심사팀·국제조사팀·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6. ~ 3.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인사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인사관리담당관 및”을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9.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관리담당관”을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14.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
1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6.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제3조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의 제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연구개발장비팀 및 시스템운영팀을 두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을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으로,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5호) 중 “관내”를 “국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4.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5.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6.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9.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4.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제도의 연구·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6. 무역통계업무 총괄
17.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
18.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9.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20.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21.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제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산지지원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2.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5.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제3조의3제4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을 “연구개발장비팀장”으로,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세행정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⑥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5.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
7. 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통관지원국)”을 “(통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관지원국장”을 “통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관세국경감시과·수출입안전검사과·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관기획과장”을 “통관물류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

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 11. 이사회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 12.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
(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 1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 14. 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입 물류과장”을 “관세국경감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장치기간경과물품·물수품”을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물수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

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6.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범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7.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9.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국제항과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5.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8.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관리
 15.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9. 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통관과장”을 “수출입안전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를 “전략물자 수출입 통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 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3.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입출항적재화물목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
6.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8. 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⑧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 기획 및 운영
2. 특송물품·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 기획 및 운영
3.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⑨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심사정책국)”을 “(심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정책국장”을 “심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세원심사과·법인심사과 및 기획심사팀”을 “심사국에 심사정책과·세원심사과·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팀”으로, “법인심사과장”을 “기업심사과장”으로, “기획심사팀장”을 “공정무역심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8.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9.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0.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14. 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심사과장”을 “기업심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심사업무”를 “법인·기획심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심사”를 “법인·기획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를 “관리(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인심사결”을 “법인·기획심사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인심사”를 “법인·기획심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적 법성에 관한 심사 계획 수립

13.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심사팀장”을 “공정무역심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

을 포함한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
6. 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심사 및 지도·감독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운영
11.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운영 및 자료분석
12.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획·운영

제6조의 제목 “(조사감시국)”을 “(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감시국장”을 “조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외환조사과 및 국제조사과를 두되, 조사총괄과장·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3항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수입물품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한다)

16.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와 관련한 사항 및 방첩 유관기관의 협력 업무

17.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8호 중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를 “불법외국환거래”로, “정보”를 “국내외 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관세법」 제27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사팀장”을 “국제조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수사”를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의 밀수단속의 기획”을 “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0호) 중 “제8호까지”를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보협력국)”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협력국장”을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과·자유무역협정집행과·원산지

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자유무역협정 집행과장 및 원산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기획과장”을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6.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교환 및 관리

8.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9. 그 밖에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 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1.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2.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7.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8.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제7조제3항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관리과장”을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영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9.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
여에 관한 사항
10.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약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12.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
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교역협력과장”을 “원산지검증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팀장”을 “해외통관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협력”을 “협력(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과·자유무역협정과·부두통관1과·부두통관2과·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을, 신항통관국에 신항통관지원과·신항수입과·신항부두통관과를”을 “통관총괄과·통관검사1과·통관검사2과·통관검사3과·통관검사4과·통관검사5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과 · 물류감시관 3명 · 여행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항통관 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과 · 신항물류감시과 · 신항통관검사1과 · 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로, “2명 · 심사정보과 · 체납관리과 · 분석실”을 “2명 · 자유무역협정검증과 · 심사정보과 · 체납관리과 · 분석실”로, “조사총괄과 · 외환조사과 · 조사정보과 · 조사관 4명 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 · 화물검사과 · 감시정보과 · 감시관 4명 및 감시장비과”를 “조사총괄과 · 조사관 3명 · 외환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통관지원과 · 자유무역협정과 · 납세심사과 · 조사과 및 휴대품과”를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통관지원과 · 납세지원과 · 심사과 · 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로,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통관지원과 · 납세심사과 · 조사과 및 휴대품과”를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통관지원과 · 심사과 · 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관지원과 · 수입과 · 납세심사과 · 조사과 · 감시과 및 휴대품과”를 “통관총괄과 · 통관검사과 · 물류감시과 · 심사과 · 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휴대품과”를 “여행자통관과”로 한다.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통관감시국에 항만수출입물류과 · 항만통관정보과 · 항만물류감시1과 · 항만물류감시2과 · 항만통관검사1과 · 항만통관검사2과 · 항만통관검사3과 · 항만통관검사4과 · 항만통관검사5과

및 신항통관과를, 공항통관감시국에 공항수출입물류과 · 공항통관정보과 · 공항물류감시1과 · 공항물류감시2과 · 공항통관검사1과 · 공항통관검사2과 · 공항통관검사3과 · 장비관리과 및 전산정보관리과를, 여행자통관1국에 공항여행자통관1과 ·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9명 · 여행자정보분석과 · 항만여행자통관과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을, 여행자통관2국에 공항여행자통관2과 및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3과 및 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 심사관 3명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 심사정보1과 · 심사정보2과 ·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 조사관 6명 · 조사정보과 및 마약조사과를 둔다.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 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 · 통관검사1과 · 통관검사2과 및 이사화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과 · 심사관 3명 · 심사정보과 · 환급심사과 · 체납관리과 및 분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 심사관 5명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사1국에 조사총괄과 · 조사관 2명 · 특수조사과 ·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 외환조사관 3명 · 외환검사와 및 외환검사관 2명을 둔다.

제11조제12항 단서 중 “세관운영과장 ·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 감시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 공항통관지원과장 · 공항수입1과장 · 특송통관1과장 · 인천항수입1과장 · 자유무역협

정총괄과장 · 공항휴대품1과장 · 공항휴대품2과장 · 여행자정보분석과장 · 인천항휴대품과장 · 심사총괄과장 · 조사총괄과장 · 조사정보과장 · 외환조사과장 · 마약조사과장 · 화물검사과장”을 “세관운영과장 · 항만수출입물류과장 · 항만통관정보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 항만물류감시1과장 · 항만통관검사1과장 · 공항수출입물류과장 · 공항통관정보과장 · 공항물류감시1과장 · 공항통관검사1과장 · 공항여행자통관1과장 · 공항여행자통관2과장 · 여행자정보분석과장 · 항만여행자통관과장 · 특송통관1과 · 심사총괄과장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 조사총괄과장 · 마약조사과장”으로, “장비과장”을 “장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단서 중 “통관지원과장 · 이사화물과장 · 자유무역협정1과장 · 심사총괄과장 · 심사정보과장 · 체납관리과장 · 조사총괄과장 · 특수조사과장 · 외환조사과장 · 조사정보과장”을 “수출입물류과장 · 통관검사1과장 · 이사화물과장 · 심사총괄1과장 · 심사총괄2과장 · 체납관리과장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 조사총괄과장 · 특수조사과장 · 외환조사총괄과장”으로, “통관지원과장 · 신항통관지원과장 · 자유무역협정과장 · 심사총괄과장 · 체납관리과장 · 조사총괄과장 · 외환조사과장 · 감시총괄과장 및 화물검사과장, 대구세관 · 광주세관 · 평택세관 및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을 “통관총괄과장 · 통관검사1과장 · 수출입물류과장 · 물류감시과장 · 신항통관감시과장 · 신항통관검사1과장 · 심사총괄과장 ·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 · 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 대구세관 · 광주세관 ·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 및 평택세관의 통관총괄과장”으

로, “감시과장”을 “평택세관의 물류감시과장 및 울산세관의 감시과장”으로, “감제12조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과장”을 “통관총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2.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3. 수출입물품 및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4. 관리대상화물의 선별·하역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분석
5.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신고서 처리방법의 변경
6. 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과장”을 “통관검사1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신고”를 “수출입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물품”을 “수출입물품”으로, “수입통관요건”을 “수출입통관요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을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12.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검사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1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제12조제1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과장”을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제20항 및 제2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을 제2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을 제2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⑲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제12조제23항(중전의 제19항)제10호 중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을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관련 밀수단속”을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위반사범의 단속업무”를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1항) 중 “신항수입과장”을 “신항통관검사1과장·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으로, “사항을”을 “사항을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 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수입물품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한다)

16. 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 사항

⑭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제16항(종전의 제13항)제8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을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의3) 중 “종합심사·법인심사 및 기획심사”를 “종합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제1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17.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7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중전의 제16항) 중 “제15항제8호”를 “제19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을 제2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0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1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항(중전의 제21항)제7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제270조의2”로 한다.

제12조제26항(중전의 제22항)제1호 중 “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 제11호 및 제13호”를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 제11호 · 제13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항 및 제21항”을 “제23항 및 제2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항(중전의 제23항) 중 “제19항”을 “제23항 및 제2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중전의 제24항) 중 “외환조사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중전의 제2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시총괄과장”을 “물류감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항 제14호(중전의 제16호) 중 “선별·정보수집·분석”을 “현장선별·정보수집·분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한정한다)

18.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20.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제9항(중전의 제25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2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대품과장”을 “여행자통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27항) 중 “휴대품검사관은 제26항”을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2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시정보과장”을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관리

3. 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0항(종전의 제29항) 중 “감시관은 제25항”을 “물류감시관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시장비과장”을 “수출입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2.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3.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4.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
5.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6.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체에 한정한다)
7. 장치기간경과화물·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 및 매각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제1항 중 “호 및”을 “호(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는 제외한다) 및”으로, “제30항제4호”를 “제1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자유무역협정2과장·자유무역협정3과장 및 자유무역협정4과장은”을 “심사관은 제8항 및”으로,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8항(제6호의 단서 사항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9항제3호·제18호·제19호, 같은 조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제12조제5항의 사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이사회물과장은 이사회물 및 이사회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회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심사총괄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제17호 및 제20호의 사항

2. 덤핑거래 심사와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에 관한 사항

⑪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제1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및 제22항을 각각 제22항 및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중전의 제12항) 중 “심사관은 제11항”을 “외환조사관은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3항, 제12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⑯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제13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2조제16항”을 “제12조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5항) 중 “제12조제15항제12호”를 “제12조제19항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6항) 중 “제12조제17항”을 “제12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4호 중 “제17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이버조사과장”을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7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항, 제21항, 제23항 및 제24항을 각각

제21항, 제20항, 제8항 및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㉔ 외환검사관은 제2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제21항(중전의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환조사과장”을 “외환조사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21항제1호”를 “제12조제2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22항제2호”를 “제12조제26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중전의 제21항) 중 “제12조제22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22항) 중 “제17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23항) 중 “외환조사관은 제20항 및 제24항”을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3항(중전의 제24항) 제1호 중 “제12조제21항제2호”를 “제12조제25항제2호”로 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기타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인천항수입1과장·인천항수입2과장 및 인천항수입3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를 “항만물류감시1과장 및 항만물류감

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제10항 및 제1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항만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만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13항(중전의 제9항) 중 “자유무역협정1과장·자유무역협정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3과장”을 “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통관검사2과장 및 공항통관검사3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를 “공항통관정보과장은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항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1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을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6항 및 제27항을 각각 제

23항 및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9항을 제2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0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제15조제8항(중전의 제15항) 중 “공항수입1과장 및 공항수입2과장”을 “항만통관검사1과장·항만통관검사2과장·항만통관검사3과장·항만통관검사4과장 및 항만통관검사5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감시과장은 제10항”을 “공항물류감시1과장 및 공항물류감시2과장은 제7항”으로,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사항을”을 “사항을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공항감시관”을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으로, “사항을”을 “사항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과장”을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0항”을 “제12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20항) 중 “공항휴대품1과장 및 공항휴대품2과장은 제12조제26항”을 “공항여행자통관1과장·공항여행자통관2과장 및 항만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 중 “공항휴대품검사관·인천공항휴대품과장 및

인천항휴대품검사관은 제20항”을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로,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중전의 제23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 특송물품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제15조제20항(중전의 제24항) 중 “제12조제13항”을 “제12조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중전의 제25항) 중 “제24항”을 “제2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중전의 제26항) 중 “제12조제15항”을 “제12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중전의 제27항) 중 “제24항·제26항”을 “제20항·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6항(중전의 제29항) 중 “제28항”을 “제2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㉘ 조사관은 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㉜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3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2항, 제33항 및 제34항을 각각 제29항, 제25항 및 제3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9항(중전의 제32항) 중 “제

12조제22항”을 “제12조제2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5항(종전의 제33항) 중 “외환조사과장”을 “분석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0항(종전의 제3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30항제4호”를 “제1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6항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19항·제21항 및 제22항”을 “제12조제23항·제25항 및 제2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제20호 및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제16호·제17호 및 같은 조 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1항 및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제30항제4호”를 “제1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6항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조제19항·제21항 및 제22항”을 “제12조제23항·제25항 및 제2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8호 사항은 제외한다)·제18항·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1항 및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5항제2호”로,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제11호까지”로, “제7항제1호부터 제6호”를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제7호·제8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을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으로 한다.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수

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통관지원과장”을 “통관총괄과장”으로, “제3항”을 “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2조 제19항제1호”를 “제12조제23항제1호”로,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제21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를 “제25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을 “여행자 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으로 한다.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 제5호, 같은 조 제16항제2호 · 제3호 · 제10호에서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

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5항제2호”로,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제11호까지”로, “제7항제1호부터 제6호”를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 · 제8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호부터 제13호 ·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제26항 · 제28항”을 “제11항”으로, “제30항제1호 · 제3호”를 “제12항제1호 · 제3호”로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 · 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4호 · 제15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제16호 · 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5항제2호”로,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제11호까지”로,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 · 제8호”로, “제30항제4호”를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6항제7호”를 “제12조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제16호 · 제17호”로, “제13항제8호의 2 · 제9호 · 제10호 · 제10호의2 · 제11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으로, “조 제17항,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제10호”를 “항 제7호”로, “제21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를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20항”을 “제12조제5항제4호”로, “제25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6항제12호 · 제13호”로, “제26항 · 제28항 및”을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 ·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제30항제1호”를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제5항제2호”로,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제11호까지”로, “제7항제1호부터 제6호”를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 · 제8호, 같은 조 제16

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을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으로 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5항제1호”를 “제12조제19항제1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관세주사 5명”을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정보관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변인 및 교역협력과장”을 “정보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변인 및 세원심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인천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제외한다)·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항역에 한정한다”를 “항

역에 한정한다)·경기도 김포시(경인항 김포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 안산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인천세관 및 서울세관”을 “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인천 광역시의 관할구역란 중 “인천세관 및 서울세관”을 “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50”을 “3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9”를 “365”로 하며, 서기관 “11”을 “1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3”을 “12”로 하며, 행정사무관 “43”을 “44”로 하고, 관세주사 “93”을 “95”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2”를 “5”로 하고, 관세주사보 “83”을 “84”로 하며, 전산주사보 “6”을 “7”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4”를 “8”로 하며, 전산서기 “2”를 “3”으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1”을 “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56”을 “372”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71”로 하며, 서기관 “11”을 “1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6”을 “15”로 하며, 행정사무관 “43”을 “45”로 하고, 관세주사 “98”을 “99”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2”를 “5”로 하고, 관세주사보 “86”을 “87”로 하며, 전산주사보 “6”을 “7”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4”를 “8”로 하며, 전산서기 “2”를 “3”으로 하고, 방송통신서기 “1”을 “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748”을 “4,76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691”을 각각 “4,7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0”을 “121”로 하고, 관세주사 “758”을 “759”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19”를 “16”으로 하고, 관세주사보 “878”을 “884”로 하며, 전산주사

보 “7”을 “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48”을 “51”로 하며, 방송통신주사보 “15”를 “11”로 한다.

별표 8 중 관세서기 “1,017”을 “1,022”로 하고, 전산서기 “7”을 “6”으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26”을 “23”으로 하고, 관세서기보 “714”를 “7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67”을 “171”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16”을 “125”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754”를 “4,773”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697”을 각각 “4,71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39”를 “140”으로 하고, 관세주사 “852”를 “853”으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21”을 “18”로 하고, 관세주사보 “884”를 “890”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7”을 “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48”을 “51”로 하며, 방송통신주사보 “15”를 “11”로 한다.

별표 8의2 중 관세서기 “968”을 “973”으로 하고, 전산서기 “5”를 “4”로 하며, 방송통신서기 “24”를 “21”로 하고, 관세서기보 “671”을 “67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67”을 “171”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16”을 “125”로 한다. 시정보과장 및 감시장비과장”을 “장비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전자상거래통관과	3명	2023년 9월 30일까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	--

별표 1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청 소속기관

별표 10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별표 10 제2호 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신고 사후심사(세관관서)	32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62명 (6급 3명, 7급 17명, 8급 19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급 3명, 전문경력관 다급 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공항과 항만 통관감시(세관관서)	28명 (6급 1명, 7급 9명, 8급 8명, 9급 7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6)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7급 5명, 8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7급 2명, 8급 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7명, 전문경력관 다급 15명)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4명, 전문경력관 다급 9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4명(관세주사 4명)”을 “3명(관세주사 3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 기구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기획심사팀·국제조사팀·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관리담당관에서, 공정무역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책과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수행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조정관 밑에 <u>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인사관리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u>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되, <u>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인사관리담당관</u> 및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기획재정담당관 · 인사혁신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 <u>기획재정담당관 · 인사혁신담당관</u> 및 ----- ----- ----- ----- -----.
③ <u>혁신기획재정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u>기획재정담당관</u>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총괄</u>	<삭 제>
8. <u>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삭 제>
9. <u>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u>	<삭 제>
10. <u>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u>	<삭 제>
11. <u>성과관리업무 총괄</u>	<삭 제>

<u>1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u>	<u><삭 제></u>
<u>13.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지원</u>	<u><삭 제></u>
<u>14. 관세정책품질의 개선</u>	<u><삭 제></u>
<u>1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u>	<u><삭 제></u>
<u>16.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u>	<u><삭 제></u>
<u><신 설></u>	<u>1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u>
<u>17. (생 략)</u>	<u>20. (현행 제17호와 같음)</u>
<u><신 설></u>	<u>1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u>
<u><신 설></u>	<u>19.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u>
④ <u>인사관리담당관</u>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u>인사혁신담당관</u>-----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u>	<u><삭 제></u>
<u>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u>	<u><삭 제></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

1. 삭 제

2. ~ 12. (생 략)

<신 설>

⑥ (생 략)

제3조의3(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삭 제>

1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총괄

12.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
가

14.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
무의 총괄·지원

15.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성과관리

16.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⑤ -----

-----.

2. ~ 12. (현행과 같음)

13.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관) 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밑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원산지지원담당관 및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보좌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

정보데이터정책관-----

--.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연구개발장비팀 및 시스템운영팀을 두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정보데이터정책관-----
--.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판정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9.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심의·조정

4.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5.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6.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9.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원산지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집행

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4.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 · 제도의 연구 ·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5.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2. ----- 국내 -----

16. 무역통계업무 총괄

17.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 · 관리 · 제공 및 공표

18.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9.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20.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21.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④ 정보관리담당관-----
----- 정보데이터정책관-----

기획관을 보좌한다.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에 관한 사
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
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 제

8.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
얼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

1.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
페이지의 운영

2.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
의 운영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 운영 및 응
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5.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
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삭 제>

<삭 제>

<삭 제>

⑤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
정집행기획관을 보좌한다.

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
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
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에 관한 사
항
6. 자유무역협정 계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 계약상대국의 동향 파
악 및 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연구개발장비팀장-----
----- 정보데이터
정책관-----.

1.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
항
3. 관세행정 분야 과학기술진흥
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
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심의 및 조정

<삭 제>

<삭 제>

⑥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u>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및 관리</u> 2. <u>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 련된 용역관리</u> 3. <u>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u> 4. <u>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u> 5. <u>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6. <u>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u> 7. <u>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 한 사항</u> 8. <u>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 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 한 사항</u> 9. <u>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u>
제4조(통관지원국) ①<u>통관지원국</u>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u>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 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를</u>	제4조(통관국) ①<u>통관국장</u>----- ----- ----- -----. ②<u>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 관세국경감시과·수출입안전검</u>

두되, 통관기획과장·수출입물류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5.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

6.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7. (생략)

<신설>

9. (생략)

10.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및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신설>

<신설>

사과·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수출입안전검사과장·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관물류정책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4. (현행 제7호와 같음)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5.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

11. · 12. (생략) <신설> 13. (생략) 14. 무역통계업무 총괄 15.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 16.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7.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9.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20. 삭제 20의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21. (생략)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	<u>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 분석을 포함한다)</u> 6. · 7.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13. <u>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u>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5. (현행 제21호와 같음) ④ <u>관세국경감시과장</u>-----
--	---

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
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
영

<신 설>

2. (생 략)

3.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

4.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운영

5.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신 설>

6. (생 략)

<신 설>

8.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
능력 측정 및 관리

<신 설>

-----.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2호와 같음)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
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국제항과 국
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5.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
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
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13. (현행 제6호와 같음)

7.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
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
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
성 확인 및 관리

8.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관리

9.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
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치기간경과물품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10. (생략)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항공기 · 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1.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
· 몰수품 ---

14.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현행과 같음)

15. 여행자(항공기 · 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
의 수립 · 시행 및 기관간 업
무협조

19. 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안전검사과장-----
-----.

1.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 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3. <u>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u> 4. <u>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5. <u>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u> 6. <u>불공정 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운영</u> 7. <u>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u> 8. <u>「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사전판정을 포함한다)</u> 9. <u>「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u> 10. <u>삭 제</u> 11. <u>원산지표시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u> ⑥·⑦ <u>삭 제</u> <u><신 설></u>	3. <u>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u> 4. <u>전략물자 수출입통관-----</u> ----- 5. <u>입출항적재화물목록 및 화물 운송주선업자의 관리</u> 6. <u>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u> 7. <u>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u> 8. <u>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삭 제></u> <u>⑧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u>
--	---

<신 설>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 기획 및 운영
2. 특송물품·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 기획 및 운영
3.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⑨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

	<u>항을 분장한다.</u> <u>1.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u> <u>3.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4.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제5조(심사정책국) ①<u>심사정책국</u>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u>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 · 세원심사과 · 법인심사과 및 기획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 · 세원심사과장 및 법인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심사국) ①<u>심사국장</u>----- ----- ----- ----- --. ② <u>심사국에 심사정책과 · 세원심사과 · 기업심사과 및 공정무역심사팀</u>----- ----- <u>기업심사과장</u>----- ----- <u>공정무역심사팀장</u>----- -----. ③ ----- -----.

1. ~ 4. (생략)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
괄 관리

6. ~ 8. (생략)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제도의 기획 및 수출
입업체 법규준수도 측정시스
템 운영

10. 법규준수도에 따른 업체별
차등관리에 관한 사항

11. ~ 16. (생략)

<신설>

1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1. ~ 16. (현행과 같음)

17.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21. (현행 제17호와 같음)

18.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
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
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
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한다)

19.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0.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
율심사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u>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물품의 사후관리</u>	<u><삭 제></u>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8. <u>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u>	<u><삭 제></u>
9. <u>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u>	<u><삭 제></u>
10. <u>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u><삭 제></u>
11. <u>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u>	<u><삭 제></u>
12. <u>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u>	<u><삭 제></u>
<u><신 설></u>	13. <u>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u>
<u><신 설></u>	14. <u>수출입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수출환급지원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u>
⑤ <u>법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⑤ <u>기업심사과장</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법인심사업무에 대한 지도</u> ·	2. <u>법인 · 기획심사업무</u>-----

감독 및 운영

3. 법인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의 관리

5.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6.·7. (생략)

8. 통관적법성에 관한 법인심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 법인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10. 삭제

11. (생략)

<신설>

<신설>

⑥ 기획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통관적
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계획

3. 법인·기획심사 -----

4. -----

----- 관리(개인통관고유부호
는 제외한다)

<삭제>

6.·7. (현행과 같음)

8. ----- 법인·기
획심사결-----

9. 법인·기획심사 -----

11. (현행과 같음)

12.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세액
및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계획 수립

13.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
의 처리 및 관리

⑥ 공정무역심사팀장-----
-----.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
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포함한다)

수립

2. 기획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운영

<신 설>

4.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
의 처리 및 관리

5. 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0. (생 략)

11. 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12.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

<삭 제>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4.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국제협
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
도의 운영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

6. 관세감면, 분할납부 물품 및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
리

7. (현행과 같음)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농수산물 수출입 관련 기획
심사 및 지도·감독

10. 덤핑거래 심사 제도의 기획
· 운영

2.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
기획·운영 및 자료분석

12.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기
획·운영

13. 삭 제

제6조(조사감시국) ①조사감시국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 ·
관세국경감시과 · 외환조사과
및 국제조사팀을 두되, 조사총
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은 부이
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국제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신 설>

14. (생 략)

<신 설>

제6조(조사국) ①조사국장-----

--.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 외환
조사과 및 국제조사과를 두되,
조사총괄과장 · 외환조사과장
및 국제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
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수사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8. (현행 제14호와 같음)

15. 「식품위생법」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
사업무의 기획 · 지도 및 조정
(수입물품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
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
장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
시·조사

5. 개항장 안에서 물품 및 용역
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
획의 수립 및 운용

7. 삭 제

8.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

16.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와 관
련한 사항 및 방첩 유관기관
의 협력 업무

17.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
정수입물품의 유통 관련 서면
실태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
항

<삭 제>

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9.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 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10.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의 관리

11.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의 운영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9.·10. (생략)

11. 관세법(「관세법」 제270조 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12.·13. (생략)

⑥ 국제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⑤ -----
-----.

1. ~ 7. (현행과 같음)

8. 불법외국환거래-----
----- 국내외 정보-----

9.·10. (현행과 같음)

11. -----「관세법」 제270조의
2-----

12.·13. (현행과 같음)

⑥ 국제조사과장-----
-----.

<삭제>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u>조사·수사</u>	2. ----- ----- ----- ----- ----- <u>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u>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u>	6. ----- -- <u>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u>밀수단속의 기획</u>	8. ----- ----- ----- ----- -----에 <u>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
9. (생략) <u><신설></u>	9. (현행과 같음)
10. 제2호, 제6호부터 <u>제8호까지</u>	10. <u>폐기물 밀수단속 등 환경범죄 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u>
	11. ----- <u>제8호까지</u>

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제7조(정보협력국) ① 정보협력국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② 정보협력국에 정보기획과·
정보관리과·교역협력과·국제
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두되,
정보기획과장 및 정보관리과장
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역협력과
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제협력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정보개발팀장은 서기관·기술
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
한다.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및 제10호-----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① 국제관
세협력국장-----

-----.

② 국제관세협력국에 국제협력
총괄과·자유무역협정집행과·
원산지검증과 및 해외통관지원
팀을 두되, 국제협력총괄과장·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및 원산
지검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하며, 해외통관지원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과장-----
-----.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
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
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

3. <u>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u> 4. <u>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u> 5. <u>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u> 6. <u>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u> <u><신 설></u> 8. <u>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 9. <u>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u>	<u>구와의 관세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u> 3. <u>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u> 4. <u>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u> 5. <u>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u> 6. <u>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u> 7. <u>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교환 및 관리</u> 8. <u>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u> 9. <u>그 밖에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u>
--	--

<신 설>

-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 1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확산 및 동향조사
- 1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4.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5.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16. 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사항

- 10.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11.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 12.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7.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
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8.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
의 수립 및 운영

18의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정책·제도의 연구·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8의3.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
진

19. (생략)

④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및 관리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
련된 용역관리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17.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8.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삭 제>

<삭 제>

19. (현행과 같음)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
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
영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
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의 확인 및 원산지확인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 6.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 7.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 설>

- 9.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 10. 관세행정데이터의 관리
- 11. 인터넷통관포탈의 이용에 관한 사항
- 1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13. 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14.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

- 5.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 6.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7.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 8.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9.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 10.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관세협약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
한 사항

⑤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
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
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
구와의 관세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
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
한 지원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신 설>

6.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
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هد동식
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⑤ 원산지검증과장-----
-----.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에 관한 사
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
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
· 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
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교환 및
관리

9.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
력

10. 그 밖에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

7. · 8. (생 략)

9.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
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

7.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
얼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
지 사전판정에 관한 사항

⑥ 해외통관지원팀장-----
-----.

1. ~ 5. (현행과 같음)

6. -----
----- 협력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7.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영

10.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
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1. (생략)

⑦ 삭제

⑧ (생략)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
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세관) ①·② (생략)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
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
통관감시국에 인천항통관지원1
과·인천항통관지원2과·인천
항수출과·인천항수입1과·인
천항수입2과·인천항수입3과·
자유무역협정총괄과·자유무역
협정1과·자유무역협정2과·자
유무역협정3과·감시총괄과·
화물검사과 및 인천항감시과를,
공항통관감시국에 공항통관지

<삭 제>

11.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세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
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
통관감시국에 항만수출입물류
과·항만통관정보과·항만물류
감시1과·항만물류감시2과·항
만통관검사1과·항만통관검사2
과·항만통관검사3과·항만통
관검사4과·항만통관검사5과
및 신항통관과를, 공항통관감시
국에 공항수출입물류과·공항
통관정보과·공항물류감시1과

원과 · 공항수출과 · 공항수입1과 · 공항수입2과 · 공항감시과 · 공항감시관 · 장비과 및 전산정보관리과를, 휴대품통관1국에 공항휴대품1과 · 여행자정보분석과 · 공항휴대품검사관 9명 · 인천항휴대품과 및 인천항휴대품검사관을, 휴대품통관2국에 공항휴대품2과 및 공항휴대품검사관 7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3과 · 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 심사관 3명 · 심사정보1과 · 심사정보2과 ·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 조사관 6명 · 조사정보과 · 외환조사과 및 마약조사과를 둔다.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 · 수출과 · 수입과 · 이사회물과를, 자유무역협정집행국에 자유무역협정1과 · 자유무역협정2

· 공항물류감시2과 · 공항통관검사1과 · 공항통관검사2과 · 공항통관검사3과 · 장비관리과 및 전산정보관리과를, 여행자통관1국에 공항여행자통관1과 ·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9명 · 여행자정보분석과 · 항만여행자통관과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을, 여행자통관2국에 공항여행자통관2과 및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7명을,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3과 및 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 · 심사관 3명 ·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 심사정보1과 · 심사정보2과 · 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 조사관 6명 · 조사정보과 및 마약조사과를 둔다.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 · 납세자보호담당관 · 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수출입물류과 · 통관검사1과 · 통관검사2과 및 이사회물과를, 심사1국에 심사총괄1

과 · 자유무역협정3과 및 자유
무역협정4과를, 심사국에 심사
총괄과 · 심사관 8명 · 심사정보
과 · 체납관리과 · 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1국에 조사총
괄과 · 특수조사과 · 사이버조사
과 · 조사정보과 및 조사관을,
조사2국에 외환조사과 · 외환검
사과 및 외환조사관 3명을 둔
다.

⑤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
사담당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통관
국에 통관지원과 · 수출과 · 수
입과 · 자유무역협정과 · 부두통
관1과 · 부두통관2과 · 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을, 신항통관국
에 신항통관지원과 · 신항수입
과 · 신항부두통관과를, 심사국
에 심사총괄과 · 심사관 2명 ·
심사정보과 · 체납관리과 · 분석
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
총괄과 · 외환조사과 · 조사정보
과 · 조사관 4명 및 외환조사관

과 · 심사관 3명 · 심사정보과 ·
환급심사과 · 체납관리과 및 분
석실을, 심사2국에 심사총괄2과
· 심사관 5명 · 자유무역협정검
증1과 · 자유무역협정검증2과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를, 조
사1국에 조사총괄과 · 조사관 2
명 · 특수조사과 · 디지털무역법
죄조사과 및 조사정보과를, 조
사2국에 외환조사총괄과 · 외환
조사관 3명 · 외환검사과 및 외
환검사관 2명을 둔다.

⑤-----

--- 통관총괄과 · 통관검사1과
· 통관검사2과 · 통관검사3과 ·
통관검사4과 · 통관검사5과를,
감시국에 수출입물류과 · 물류
감시과 · 물류감시관 3명 · 여행
자통관과 및 장비관리과를, 신
항통관감시국에 신항통관감시
과 · 신항물류감시과 · 신항통관
검사1과 · 신항통관검사2과 및
신항통관검사3과를--- 2명 · 자
유무역협정검증과 · 심사정보과

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화물
검사과·감시정보과·감시관 4
명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⑥대구세관에 세관운영과·감
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관지원과·자유무역협정과
·납세심사과·조사과 및 휴대
품과를 두고, 광주세관에 세관
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
업지원센터·통관지원과·납세
심사과·조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⑦ 평택세관에 통관지원과·수
입과·납세심사과·조사과·감
시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⑧ (생략)

⑨ 김포공항세관·김해공항세
관·청주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
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휴대
품과를 둔다.

⑩·⑪ (생략)

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
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
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

·채납관리과·분석실 --- 조
사총괄과·조사관 3명·외환조
사과 및 조사정보과---.

⑥ ----- 세관운영과·감사
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관지원과·납세지원과·심사
과·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
----- 세관
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
업지원센터·통관지원과·심사
과·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
---.

⑦ ----- 통관총괄과·통
관검사과·물류감시과·심사과
·조사과 및 여행자통관과----
-----.

⑧ (현행과 같음)

⑨ -----

----- 여행
자통관과-----
--.

⑩·⑪ (현행과 같음)

⑫ -----

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
만, 세관운영과장·인천항통관
지원1과장·감시총괄과장은 서
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
기업지원센터장·공항통관지원
과장·공항수입1과장·특송통
관1과장·인천항수입1과장·자
유무역협정총괄과장·공항휴대
품1과장·공항휴대품2과장·여
행자정보분석과장·인천항휴대
품과장·심사총괄과장·조사총
괄과장·조사정보과장·외환조
사과장·마약조사과장·화물검
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
관으로, 장비과장 및 전산정보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
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
검사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
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
다.

⑬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장·담당관·심사관

-- 세관운영과장·항만수출입
물류과장·항만통관정보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
입기업지원센터장·항만물류감
시1과장·항만통관검사1과장·
공항수출입물류과장·공항통관
정보과장·공항물류감시1과장
·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여
행자통관1과장·공항여행자통
관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
·항만여행자통관과장·특송통
관1과·심사총괄과장·자유무
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괄과
장·마약조사과장-----
----- 장비관리과장 -----

--.

⑬ -----

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시정보과장 및 감시장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⑭ (생략)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신설>

22. (생략)

② (생략)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

세관의 통관총괄과장-----

-- 평택세관의 물류감시과장
및 울산세관의 감시과장-----

----- 장비관리과장-----

⑭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1. ~ 21. (현행과 같음)

2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3. (현행 제2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삭제>

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
에 관한 사항

3. (생략)

<신설>

<신설>

④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6.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
역의 관리
7.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
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8. 출항적하목록의 관리
9.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
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

3. (현행과 같음)

4.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
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
항

5.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삭제>

능력의 측정 및 관리

11. 장치기간경과화물 · 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 공
매 및 매각

12. 삭 제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
원

14.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15.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6. 삭 제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수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 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

⑤ 통관총괄과장-----
---.

1.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2.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종합관리

3. 수출입물품 및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 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4.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 하역
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 · 분석

5.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u>에 관한 업무</u> 6. <u>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u> <u><신 설></u> 8. <u>수출물품과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u> 9. <u>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u> ⑥ <u>수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수입신고의 수리</u> 2. <u>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감정 및 수입통관요건의 확인</u> <u><신 설></u> <u>2의2.·3. (생 략)</u> <u><신 설></u> <u><신 설></u> <u>4.·5. (생 략)</u> 6. <u>수입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u>	<u>신고한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신고서처리방법의 변경</u> 6. <u>수출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u> 7. <u>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u><삭 제></u> <u><삭 제></u> ⑥ <u>통관검사1과장</u>----- ---. 1. <u>수출입신고</u>--- 2. <u>수출입물품</u>----- -- <u>수출입통관요건</u>--- 3. <u>물품의 반송</u> 8.·9. (현행 제2호의2 및 제3호와 같음) 4. <u>수출물품 선적의 관리</u> 5. <u>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u> 10.·11.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u>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u>
---	--

7.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8. 남북교역물품 반입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자유무역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⑧ 부두통관1과장은 제6항 각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⑨ 부두통관 2과장은 신선대부

7.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

--

<삭 제>

12.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 화물의 검사

1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⑦ 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통관검사4과장 및 통관검사5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⑩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

<삭 제>

<삭 제>

1. ~ 4.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두 · 감만부두 · 신감만부두 및 용호부두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신항수입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신항부두통관과장은 신항 부두 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삭제
3. · 3의2. (생략)

<삭제>

⑮ 신항통관검사1과장 · 신항통관검사2과장 및 신항통관검사3과장-----
-- 사항을 각각 -----

<삭제>

⑯ -----
 -----.

1. (현행과 같음)

2. · 3. (현행 제3호 및 제3호의2

3의3. 종합심사·법인심사 및 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신 설>

4.·5. (생략)

7. ~ 8. (생략)

8의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조사

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신 설>

10. ~ 11. (생략)

와 같음)

4. 종합심사-----

--

5. 법인·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와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삭 제>

<삭 제>

11.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3. ~ 16. (현행 제10호부터 제

<신 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⑭ 심사관은 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⑮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
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11호까지와 같음)

12. 관세감면, 분할납부 및 용도
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

20. (현행 제12호와 같음)

17.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

1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공인 희망업체에 대한 기
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
에 관한 사항

1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
율심사에 관한 사항

⑭ 신항물류감시과장은 제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
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⑰ ----- 제16항 -----

-----.

<삭 제>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①⑥ 채납관리과장은 제15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①⑦ (생략)

①⑧ 분석관은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②⑩ ----- 제19항제8호

-----.

②⑪ (현행 제17항과 같음)

<삭제>

①⑨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채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

⑲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11.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⑳ ---.

1. ~ 9. (현행과 같음)

10. -----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1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u>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u> <u>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u> <u>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하</u> <u>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및</u> <u>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u>
12.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 <u>관련 밀수단속</u>	12. ----- -- <u>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u> <u>업무</u>
13.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CITES) <u>위반사범의 단</u> <u>속업무</u>	13. ----- ----- ----- ----- <u>위반사범에 대한</u> <u>범칙수사업무</u>
14. (생 략) <u><신 설></u>	14. (현행과 같음)
	15. 「식품위생법」 등 보건관련 <u>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u> <u>사에 관한 사항(수입물품과</u> <u>관련된 범죄에 한정한다)</u>
15. (생 략) <u><신 설></u>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u>세관의 방첩활동과 관련한</u> <u>사항</u> <u><삭 제></u>
⑳ <u>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u>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u> <u>물의 검사</u>	
2. <u>삭 제</u>	

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㉑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7. 관세법(「관세법」 제270조 제1항제1호 및 제270조의2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8. ~ 10. (생략)

㉒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생략)

3.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㉓ 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㉔ 외환조사관은 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㉕ ---.

1. ~ 5. (현행과 같음)

7. ----- 제270조의
2-----

8. ~ 10. (현행과 같음)

㉖ ---.

1. 제2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5호-----

2. (현행과 같음)

3. 제23항 및 제25항-----

㉗ --- 제23항 및 제25항 -----
-----.

㉘ 분석관-----
--.

사항을 분장한다.

㉔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5. ~ 6. (생 략)
7.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8. ~ 10. (생 략)
11. 삭 제
12. ~ 14. (생 략)

15.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
화물의 선별·하역장소 지정
및 정보수집·분석

16.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
화물의 선별·정보수집·분석
및 추적 감시·검사

<신 설>

<신 설>

17. · 18. (생 략)

㉕ 물류감시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4.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5. ~ 6. (현행과 같음)
7.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8. ~ 10. (현행과 같음)

11. ~ 13. (현행 제12호부터 제
14호까지와 같음)

<삭 제>

14. -----
----- 현장선별·정보수집·
분석 -----

17.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
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선박
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
업자에 한정한다)

18.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15. · 16. (현행 제17호 및 제18

<신 설>

<신 설>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⑥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②⑦ 휴대품검사관은 제26항 각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②⑧ 감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2.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3.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신 설>

<신 설>

호와 같음)

1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20.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삭 제>

①① 여행자통관과장-----
-----.

1. ~ 5. (현행과 같음)

①③ 신항통관감시과장은 제5항 및 제8항-----
-----.

①② 장비관리과장-----
-----.

1.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관리

3. 감시장비(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및 검색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5. 감시정 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㉔ 감시관은 제2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㉕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관리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㉖ 물류감시관은 제9항 -----

-----.

㉗ 수출입물류과장-----
-----.

1.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2.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3.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4.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

5.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6.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 능력평가 측정 및 관리(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체에 한정한다)

7. 장치기간경과화물·물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구매 및 매각

8.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㉓ (생략)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0항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③·④ (생략)

⑤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행 제31항과 같음)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호(제16호부터 제22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 제12항제4호-----.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8항(제6호의 단서 사항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9항제3호·제18호·제19호, 같은 조 제11항 및

⑥수출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수입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이사회물과장은 이사회물 및 이사회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 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5호부터 제9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회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자유무역협정1과장은 제12

같은 조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통관검사1과장 및 통관검사2과장은 제12조제5항의 사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⑦ 이사회물과장은 이사회물 및 이사회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 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 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회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⑨ 심사총괄2과장은 다음 각 호

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자유무역협정2과장 · 자유무역협정3과장 및 자유무역협정4과장은 제9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심사관은 제1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⑬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항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⑭ 채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 제17호 및 제20호의 사항

2. 덤핑거래 심사와 덤핑방지관세 연례재검토에 관한 사항

⑩ 심사관은 제8항 및 -----
----- 세관장

--.

⑪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외환조사관은 제21항-----
---.

<삭 제>

⑬ ----- 제12조제20항
-----.

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 자

⑮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5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⑯ 분석실장은 제12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⑰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 같은 조 제25항제3호 · 제15호, 같은 조 제26항 각 호, 같은 조 제28항제1호 · 제2호, 같은 조 제30항제1호 · 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⑱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삭 제

4.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

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 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1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⑫ ----- 제12조제19항 제12호-----
-----.

⑬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⑭ ----- 제12조제21항 --
-----.

<삭 제>

⑲ -----
-----.

1. · 2. (현행과 같음)

4. 제16항-----

업무

①⑨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민간사이버감시단 운영

5.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신설>

②⑩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1항제1호 및 제4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22항제2호의 사항

3. (생략)

②⑪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⑫ 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
한다.

②⑬ 외환조사관은 제20항 및 제2
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

①⑨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제16항-----

--

6.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
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
태 조사에 관한 사항

②⑭ 외환조사총괄과장-----
-----.

1. 제12조제25항제1호 -----

2. 제12조제26항제2호-----

3. (현행과 같음)

②⑮ ----- 제12조제26항
-----.

①⑰ ----- 제16항-----

-----.

⑧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

-----.

1.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4

<신 설>

<신 설>

㉔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2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생략)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생략)

㉔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호·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기타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㉔ 외환검사관은 제2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㉓ ---.

1. 제12조제25항제2호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인천항통관지원1과장 및 인천항통관지원2과장은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⑥ 인천항수출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⑦ 인천항수입1과장·인천항수입2과장 및 인천항수입3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⑧ 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⑨ 자유무역협정1과장·자유무역협정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3과장은 제8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⑩ 감시총괄과장은 제12조제25항·제28항 및 제30항제2호의

⑤ 항만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만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항만물류감시1과장 및 항만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

<삭 제>

⑨ 신항통관과장은 제12조제6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통관검사2과장 및 공항통관검사3과장-----
-----.

<삭 제>

사항을 분장한다.

⑪ 화물검사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⑫ 인천항감시과장은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⑬ 공항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⑭ 공항수출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공항수입1과장 및 공항수입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⑯ 공항감시과장은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⑰ 공항감시관은 제16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공항통관정보과장은 제6항-----.

<삭 제>

⑩ 공항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⑧ 항만통관검사1과장·항만통관검사2과장·항만통관검사3과장·항만통관검사4과장 및 항만통관검사5장---

⑫ 공항물류감시1과장 및 공항물류감시2과장은 제7항-----
--- 관세청장-- 사항을 각각 -
--.

1. ~ 3. (현행과 같음)

⑰ 공항여행자통관검사관 및 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 사항을 각각 --.

⑮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생략)
2. 제12조제30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3. (생략)

⑯ (생략)

⑰ 공항휴대품1과장 및 공항휴
대품2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⑱ (생략)

㉑ 공항휴대품검사관·인천항
휴대품과장 및 인천항휴대품검
사관은 제20항의 사항 중 세관
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
장한다.

㉒ 특송통관1과장·특송통관2
과장·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
통관4과장은 다음 사항 중 관세
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 ~ 6. (생략)

<신설>

⑭ 장비관리과장-----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2항 -----

3. (현행과 같음)

⑮ (현행 제19항과 같음)

⑯ 공항여행자통관1과장·공항
여행자통관2과장 및 항만여행
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
-----.

⑱ (현행 제21항과 같음)

㉑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은 제12
조제18항 각 호----- 관
세청장-----
-----.

⑲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특송
물품에 대한 구매예정가격의
산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㉔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㉕ 심사관은 제2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㉖ 심사정보1과장은 제12조제1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8. 특송물품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 · 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㉗ ----- 제12조제16항 -----.

㉘ --- 제20항-----.

㉙ --- 제12조제19항 -----.

㉚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3항 및 제2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㉔ 심사정보2과장은 제12조제1항제21호 및 이 조 제24항·제2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㉕ 분석실장은 제12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㉖ 분석관은 제28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㉗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의 밀수 단속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용 및 관리

㉘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2. 제33항의 사항

㉙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건의 운용 및 관리

㉚ -----
----- 제20항·제23항-----
-----.

㉛ 조사관은 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㉜ --- 제25항-----
-----.

㉝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㉞ --- 제12조제26항 -----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④ 마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의 밀수 단속

2. (생략)

<신설>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0항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③ (생략)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자유무역협정과장은 제12조

-----.

②⑤ 분석실장-----
---.

③⑩ ---.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2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12항 제4호-----.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2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6항제18호---.

⑤ 납세지원과장은 제12조제16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 · 제15항 및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 제21항 및 제2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0항,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조 제26항 ·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 ·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 ③ (생략)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 · 제20호 및 같은 조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 제16호 · 제17호 및 같은 조 제18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 제12조제23항 · 제25항 및 제26항-----
-----.

⑧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 · 제11항 및 제12항제1호 · 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12항제4호-----.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2조제5항 · 제6항 · 제8항 및 제16항제18호--.

⑤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제15항 및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21항 및 제2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0항,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조 제26항·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6항(제18호 사항은 제외한다)·제18항·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제12조제23항 .
제25항 및 제26항-----
 -----.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 9항·제11항 및 제12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
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5항 제2호 -----

--- 제11호까지 -----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6항
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
· 제9호 · 제10호 · 제10호의2 ·
제11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
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
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
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
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
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
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
20항 및 제21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7
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 · 제3호 · 제4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
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
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

--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 제7호 · 제8호, 같은 조 제16
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
호부터 제3호---.

②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 ·
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
터 제15호까지 · 제18호부터 제
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
· 제3호 · 제4호, 같은 조 제16
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제1
6호 · 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
1호부터 제5호까지 · 제6호(수
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
에 한정한다) · 제7호부터 제14
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 ·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5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및 제10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
11항-----.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
무분장) ① 통관총괄과장-----

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수입과장은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제5호의2·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제11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 제3항 제1호 및 제3호 ---
 --- 제5항 제2
호 ---

②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
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
다.

③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8
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심사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16항제2

④ 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감시과장은 제12조제20항,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

호 · 제3호 · 제10호에서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6호(수입 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제12조제23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 제25항제1호 · 제3호 · 제6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
-----.

<삭 제>

⑥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5항제2호-----

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제11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수입 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25항제

----- 제11호까지-----
-----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제8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4호·제15호, 같은 조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15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6항·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9항제1호부터 제13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제11항 ----- 제12항제1호·제3호-----
-----.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제5항제2호-----

----- 제11호까지-----
-----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제8호--- 제12항제4호, 같은 조 제16항제18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제11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7항,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0항,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6항·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략)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

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 ----- 제12조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7호---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

----- 항제7호-----

-----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

③ ----- 제12조제5항제4호---- 제6항제12호·제13호-----
-----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 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 · 제9호 · 제10호 · 제10호의2 · 제11호,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7항,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및 제2

----- 제5항제2호-----

----- 제11호까지-----
----- 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7호 · 제8호, 같은 조 제16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부터 제3호---.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2호 · 제13호, 같은 조 제9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 제16호 · 제17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우편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이하 이 조에서 “소액물품”이라 한다) 외의 물품에 대한 제12조제1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2. (생략)

② (생략)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5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1. -----

----- 제12조제19항제1호-----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 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6명(<u>관세주사 5명, 관세주사보 1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 ----- -----<u>행정사</u> <u>무관 1명, 관세주사 4명</u>----- -----.
②·③ (생략)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의 <u>정보관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변인</u> 및 <u>교역협력과장</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정보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변인</u> 및 <u>세원심사과장</u>----- -----.
기획재정부령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u>4명(관세주사 4명)</u>,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 및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u>3명(관세주사 3명)</u>----- -----

별표 8의2의 정원 6명(관세주사 보 6명)은 2022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350</u>		<u>366</u>	+16	
일반직	.	계	.		.		
	.		.		.		
	.		.		.		
서기관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		.		
	.		.		.		
행정사무관	.		.		.		
	.		.		.		
관세주사	.		.		.		
	.		.		.		
	.		.		.		

방송통신주사	<u>2</u>	<u>5</u>	+3
관세주사보	<u>83</u>	<u>84</u>	+1
.	.	.	
전산주사보	<u>6</u>	<u>7</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4</u>	<u>8</u>	+4
.	.	.	
전산서기	<u>2</u>	<u>3</u>	+1
방송통신서기	<u>1</u>	<u>4</u>	+3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6</u>	• <u>372</u>	+16
•	•	•	
•	•	•	
일반직 계	<u>355</u>	<u>371</u>	+16
•	•	•	
•	•	•	
서기관	<u>11</u>	<u>12</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6</u>	<u>15</u>	-1
•	•	•	
•	•	•	
행정사무관	<u>43</u>	<u>45</u>	+2
•	•	•	
•	•	•	
관세주사	<u>98</u>	<u>99</u>	+1
•	•	•	
•	•	•	

방송통신주사	<u>2</u>	<u>5</u>	+3
관세주사보	<u>86</u>	<u>87</u>	+1
·	·	·	
전산주사보	<u>6</u>	<u>7</u>	+1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4</u>	<u>8</u>	+4
·	·	·	
전산서기	<u>2</u>	<u>3</u>	+1
방송통신서기	<u>1</u>	<u>4</u>	+3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748</u>	<u>4,767</u>	+19
1. 공무원			
계 (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 제외한다)	<u>4,691</u>	<u>4,710</u>	+19
일반직 계	<u>4,691</u>	<u>4,710</u>	+19
·	·	·	
·	·	·	
행정사무관	<u>120</u>	<u>121</u>	+1
·	·	·	
·	·	·	
관세주사	<u>758</u>	<u>759</u>	+1
·	·	·	
·	·	·	
방송통신주사	<u>19</u>	<u>16</u>	-3
·	·	·	
·	·	·	
관세주사보	<u>878</u>	<u>884</u>	+6
·	·	·	

·	·	·	
전산주사보	<u>7</u>	<u>6</u>	-1
공업주사보	<u>48</u>	<u>51</u>	+3
방송통신주사보	<u>15</u>	<u>11</u>	-4
·	·	·	
·	·	·	
관세서기	<u>1,017</u>	<u>1,022</u>	+5
전산서기	<u>7</u>	<u>6</u>	-1
·	·	·	
방송통신서기	<u>26</u>	<u>23</u>	-3
·	·	·	
·	·	·	
관세서기보	<u>714</u>	<u>716</u>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67</u>	<u>171</u>	+4
·	·	·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16</u>	<u>125</u>	+9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754</u>	<u>4,773</u>	+19
1. 공무원			
계 (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 제외한다)	<u>4,697</u>	<u>4,716</u>	+19
일반직 계	<u>4,697</u>	<u>4,716</u>	+19
·	·	·	
·	·	·	
행정사무관	<u>139</u>	<u>140</u>	+1
·	·	·	
·	·	·	
관세주사	<u>852</u>	<u>853</u>	+1
·	·	·	
·	·	·	
방송통신주사	<u>21</u>	<u>18</u>	-3
·	·	·	
·	·	·	
관세주사보	<u>884</u>	<u>890</u>	+6
·	·	·	

·	·	·	
전산주사보	<u>7</u>	<u>6</u>	-1
공업주사보	<u>48</u>	<u>51</u>	+3
방송통신주사보	<u>15</u>	<u>11</u>	-4
·	·	·	
·	·	·	
관세서기	<u>968</u>	<u>973</u>	+5
전산서기	<u>5</u>	<u>4</u>	-1
·	·	·	
방송통신서기	<u>24</u>	<u>21</u>	-3
·	·	·	
·	·	·	
관세서기보	<u>671</u>	<u>673</u>	+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67</u>	<u>171</u>	+4
·	·	·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u>116</u>	<u>125</u>	+9
·	·	·	
·	·	·	